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S3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08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u>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٧.	
1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3-252-055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제외한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11.08.(금)	'24.11.18.(월)~ '24.11.19(화)	'24.11.20.(수)	'24.11.21.(목)	'24.11.27.(수)	'24.11.30.(토)~ '24.12.05.(목)	'24.12.09.(월)~ '24.12.13.(금)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u>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	공급			일반공급		
ଅଟମ୍ୟ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불필요	6개월 0	l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 충족	1순위(6개월	! 이상, 지역별·면적별 (계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200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1 102 1 111 18== 20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은 제외),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동점 시 추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더원.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 및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 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1.18.(월) ~ 11.19(화)	'24.11.20.(수)	'24.11.21.(목)	'24.11.27.(수)	'24.11.30.(토) ~ 12.05.(목)	'24.12.09.(월) ~ 12.13.(금)	
장 소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이전기관 제외)			■ (PC·모바일) 청약홈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사전방문예약제(홈페이지 방문 ※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송절동 147-3번지) !예약 후 방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도 청약은 가능하나, 금회 공급 하는 주택에 당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을 받게 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기간 중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 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는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수도권 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2024.11.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 - 16700호(2024.11.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08일

1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8-3번지 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S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1층, 4개동 총 543세대

[특별공급 354세대(이전기관(산업단지) 80세대, 기관추천 43세대, 다자녀가구 53세대, 신혼부부 79세대, 생애최초 83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7151						특별	등급 세	대수			OIHI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계약 - (지하 주차장등)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 급 세대수	이전	기관	다자녀	신혼	생애	노부모	계	일반 공급 세대수	우선 배정	
					전용	주거공용	소계	(시에 구시66)				기관	추천	가구	부부	최초	부양		**11-11-1	세대수
		1	084.9900A	84A	84.9900	31.6265	116.6165	57.6121	174.2286	29.7362	300	45	30	30	54	57	9	225	75	8
	2024000644	2	084.9600B	84B	84.9600	31.2983	116.2583	57.5918	173.8501	29.7258	106	15	10	10	19	20	3	77	29	3
민영 주택	2024000044	3	084.9400C	84C	84.9400	32.1328	117.0728	57.5782	174.6510	29.7188	36	5	3	3	6	6	1	24	12	1
		4	113.7300	113	113.7300	40.5073	154.2373	77.0941	231.3314	39.7918	101	15	-	10	ı	-	3	28	73	3
	А									543	80	43	53	79	83	16	354	189	15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00A	084.9600B	084.9400C	113.7300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11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주택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10t7 (2004)					(LTI, E)			
					고그	금액		계약금	∄(20%)			중도금	1 (60%)			잔금(20%)
주택형	도/숙 기비	층구분	해당		0 1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약식)	동/호 구분	중구문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2025-02-17	2025-06-16	2025-12-15	2026-06-15	2026-11-16	2027-04-15	2027-09-17	입주지정일
	304동 3, 4호	1층	2	102,782,400	296,217,600	-	399,0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79,800,000
		2층	6	104,662,880	301,637,120	-	406,30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81,260,000
		3층	6	107,058,560	308,541,440	-	415,60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83,120,000
	301동 3 4호	4층	6	109,480,000	315,520,000	-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85,000,000
	301동 3, 4호 303동 3, 4호 304동 3, 4호	5층	6	111,875,680	322,424,320	-	434,30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86,860,000
	304동 3, 4호	6층 ~ 9층	24	114,297,120	329,402,880	-	443,70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88,740,000
		10층 ~ 19층	60	116,692,800	336,307,200	-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84A		20층 이상	111	119,088,480	343,211,520	-	462,30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92,460,000
		2층	2	104,662,880	301,637,120	-	406,30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40,630,000	81,260,000
		3층	2	107,058,560	308,541,440	-	415,60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41,560,000	83,120,000
	204 5 5 +	4층	2	109,480,000	315,520,000	-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85,000,000
	301동 5호 303동 5호	5층	2	111,875,680	322,424,320	-	434,30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43,430,000	86,860,000
	3038 32	6층 ~ 9층	8	114,297,120	329,402,880	-	443,70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88,740,000
		10층 ~ 19층	20	116,692,800	336,307,200	-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20층 이상	43	119,088,480	343,211,520	-	462,30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92,460,000
	304동 2호	1층	1	101,262,560	291,837,440	-	393,10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78,620,000
		2층	3	103,143,040	297,256,960	-	400,40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80,080,000
		3층	3	105,538,720	304,161,280	-	409,70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40,970,000	81,940,000
84B	301동 2호	4층	3	107,934,400	311,065,600	-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83,800,000
0 4 D	301동 2호 303동 2호 304동 2호	5층	3	110,330,080	317,969,920	-	428,30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85,660,000
	304동 2오	6층 ~ 9층	12	112,725,760	324,874,240	-	437,60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87,520,000
		10층 ~ 19층	30	115,147,200	331,852,800	-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89,400,000
		20층 이상	51	117,542,880	338,757,120	-	456,30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45,630,000	91,260,000
		1층	1	97,398,560	280,701,440	-	378,10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37,810,000	75,620,000
		2층	1	99,021,440	285,378,560	-	384,40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76,880,000
		3층	1	101,442,880	292,357,120	-	393,80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39,380,000	78,760,000
84C	304동 5호	4층	1	103,864,320	299,335,680	-	403,20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80,640,000
0 4 C		5층	1	106,285,760	306,314,240	-	412,60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82,520,000
		6층 ~ 9층	4	108,707,200	313,292,800	-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84,400,000
		10층 ~ 19층	10	111,102,880	320,197,120	-	431,30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43,130,000	86,260,000
		20층 이상	17	113,524,320	327,175,680	-	440,70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88,140,000
	304동 1호	1층	1	127,861,360	368,489,670	36,848,970	533,200,000	53,320,000	53,320,000	53,320,000	53,320,000	53,320,000	53,320,000	53,320,000	53,320,000	106,640,000
		2층	3	130,355,280	375,677,010	37,567,710	543,60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108,720,000
		3층	3	133,304,820	384,177,430	38,417,750	555,900,000	55,590,000	55,590,000	55,590,000	55,590,000	55,590,000	55,590,000	55,590,000	55,590,000	111,180,000
113	301동 1호	4층	3	136,278,340	392,746,960	39,274,700	568,30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113,660,000
113	301동 1호 303동 1호 304동 1호	5층	3	139,227,880	401,247,380	40,124,740	580,60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116,120,000
	304농 1호	6층 ~ 9층	12	142,201,400	409,816,900	40,981,700	593,0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18,600,000
		10층 ~ 19층	30	145,150,940	418,317,320	41,831,740	605,30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121,060,000
		20층 이상	46	148,124,460	426,886,850	42,688,690	617,70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123,540,000

■ 공통 유의 사항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청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건설예정인 건물은 사업주체에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지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 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 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선납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으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 가.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나.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7	분	84A	84B	84C	113	합 계
	장애인	6	2	1	-	9
	국가유공자	6	2	1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	-	-	7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5	2	-	-	7
	중소기업 근로자	6	2	1	-	9
	의사상자	2	-	-	-	2
	소계	30	10	3	-	43
이전기관(산업	· 단지) 특별공급	45	15	5	15	80
다자녀가구	1 특별공급	30	10	3	10	53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6	-	79
노부모부잉	9	3	1	3	16	
생애최초	57	20	6	-	83	
합	계	225	77	24	28	35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	원에게 한 차리	예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디	기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	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탁	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 기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					
		네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군 긴1	전)에 많은 성격전성자의 성염전에 규모 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	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	당 특별공급별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0	에도 당첨자로 토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	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비	배우자 분리세대	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				
	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	별공급[이전기관(산업단지) 종/	사자 특별공급	제외]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	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	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여	이 경과하고, 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7	H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 ⁽	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	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여	하고, 지역별·면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						
청약통장	=				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자격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		,						
			[청약예금의	예지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	시	그 밖의 광역시	(청주시 및 충청북도 포함)				
	전용면적 85m'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전용면적 135m² 이하	6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7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년 년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다른 거주지연 .						
				= =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2-1

구분		내용	
대상자		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	E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toter Todo
	장애인	충청북도청 노인장애인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추천기관	장기복무제대군인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중소기업근로자	충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해당 요건을 갖춘 분
	의사상자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당첨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2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열	일 현재 청곡	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	더라도 입주	- - - - 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시	네대구성	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	명 이상(태	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부							
		■ E-15세 기본의 사기 128 시청(세계, 1884 기 포함)가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힘									
			, 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SEM CAMPAN AND BE OF A TEMOCRAP MENT TO EMBE BOARD						
			<u> </u>		[‡]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_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	_							
	■ ②MA : M8/14 /1 ■ ②배점	171(0171		1(🗀 🗇	(1 / 1)						
	배점항목	총배점	<u>배점기준</u>	-1.4	비고						
			기준	점수	ı—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명	10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당첨자	세네구경(3))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무주택기간(4) 20 5년 이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IICL 11 C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에						
	해당 시·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나는 광역사 특별되었다. 기존에고 모든 모든별되었고 기존에면 소드라면 경우 내용경기 이번 전체						
	거주기간(5)		1년 이상 ~ 5년 미만	5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를 해당 시·도로 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조기계조머니크 힘이 이후 펜	ㅎ이 건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온의 성	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	등본이나 주	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신혼부부는 혼인선 ※ 단, 혼인기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 혼인기간이 7년 (■ 「신혼부부 주택 등	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付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A E 7 H	JII O						
	단계	소득구분	내용 이즈지다자고그의 청제 2세 미마스세기 다는 나은 표하하다면 지네가 아는 바이크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지	다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	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여	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	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	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이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기	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벽 거주자(청주시 거주자) → フ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비고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 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ᄎᅒᄁ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내용				
		- 건축물가액	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즈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i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 * 「농지법」 등재된 경 * 「초지법」 소재지와 * 공부상 도. * 종중소유 . 경우로서	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괸 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 동일한 주소인 경우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함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3억3,1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단, 아래 경 가 (동지법) 등재된 경 * 「초지법」 등재된 경 * 「초지법」 소재지와 * 공부상 도 * 중중소유 경우로서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참 1호에 1호에 따른 초자로서 소유자가 「축사법」 제2조제 1호에			

비고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서								
110.1			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_ · · · · · · ·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거주자)								
	┃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	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못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	<mark>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mark>	J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	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점수	가점구분	점수					
	71007	7186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①무주택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당첨자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선정방법			0명	5	4명	25					
700H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21371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47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					
		_	5년 이성 ~ 6년 미년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년 15년 이상	16 17					
		-	7년 이상 ~ 7년 미년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약영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 노부모부양 특벽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를 한사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1.1 .16.16 61							
			·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한저축으로 저화한 경우 저화개석하 낙	읔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OBM THE COLOT CEMEN 2	= 1L-+ D					
비고			우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			프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어								
		. 1(11 0 1-1 11 11 1		" " " " " " " " " " " " " " " " " " " "							

2	_	
_	-	J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오	의) 2024.03.25. 시형	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 ,	•						
			실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가' 또는 '나'에 해						
			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는 사이(데에, 입장사이 모임, 중의단장사기 본단 중에 하면 장무 중절한 무단중학표중단에 중세된 사이)가 있는 분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137		•	어디면서 미슨한 사이모 없는 문) !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 . –						
		, , , , , ,	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아파트'는 전 주택형 전용면적 84m² 이상으로 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3점시 현경 분시 : ①포득푸분 → ②시축 → ③두점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이즈자마자고그의 취제 3세 미마실세가 다느 나오 표합하다이 지나가 아느 바이크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신생아	세네크 필딩판도국어 전편도 모시는도시 기구전부를 필딩판도국크 130% 어어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당첨자	2단계	일반공급(5%)	러나 카프리잉프는 근 배크 배 카르(르베 카크)로 드는 프리트 가르다 나 가 쓰는 근표를 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CLAII	* # 7 7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	│ ├계벽 낰청자는 다	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다 한테 당답대장에 포함되어, 2년에 변경에 중 작업에는 5년에 중합대장에 포함되어 많고, 후면에 중합대장에 포함함 자(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거주자)					
		1 . 310.117 /17	-1(O 1 · 1 · 1 · 1 · 1) · · · · · · · · ·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エラナモ	미걸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C(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 - 강보험법 시행령 _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조(동일)

비고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8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함. 특별공급 대상 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현도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함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다.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합니다.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 제2항의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이 해당 산업 기,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 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경임자 글파글에 붙는 구국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	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 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 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시근로자의 범위

-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대상자 세부사항

1.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범위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의 범위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방과후 과정"이란「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연구기관의 범위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개정 2021.08.17.>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2020.05.19.>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 기관을 말한다.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 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 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 구시설을 갖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연구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대상자 세부사항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42조(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사.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대상자 세부사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 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연구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청약신청방법

-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발급 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위 내용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자격요건	구 분	특별	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	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및 충청북도 포함)		
	전용면적 85m' 이하 전용면적 102m' 이하 전용면적 135m' 이하 모든면적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증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병	자) → 기타지						
	구분		가짐	설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	<u>5</u> }	40	%		60%		
	전용면적 85m² 초과 - 1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2	2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기합기신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메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당첨자 선정방법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방법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만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주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다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조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입주자저축의	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특별공급(이전기관 제외)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청약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③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	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 청약신청 단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	령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민영주택)	및 각종 청약	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27.(수) ~ 2024.12.06(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당첨자발표 서비스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1.2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5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장 소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11.30.(토) ~ 12.05.(목) 6일간 (10:00 ~ 17:00)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12.16.(월) ~ 12.19.(목) 4일간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47-3번지)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의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47-3번지)
-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 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 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 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1> 특별공급(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서류	유형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공 <mark>통</mark> 서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フリフレスセン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EU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 공급 포함	0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해외 근무(단신부임) 증명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증빙서류 확인 ※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		
		0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다자녀가구 특별 공 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 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보이 ㄸ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혼인 신고일 확인)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 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1202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이료기과에서 방해하 서르에 하하단단 이사면 축사예정의 이료기과 등로버호 및 여라쳐 및 진이 날이 워보)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혼인 신고일 확인)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생애최초 특별 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메구시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 공 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110 1112 1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0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 당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서식1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제출	
이전기관 (산업단지) 특별공급	0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 당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산업단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허가증(국,공립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2. 법인 인감증명서(국,공립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3. 제 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주기업에만 해당) 4.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구기관에만 해당) 5.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관에만 해당) 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은행발급,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해당) 7.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8.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9. 비자 사본(외국인만 해당)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유치원,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13. 재직 증명서(유치원,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위 첨부서류 외「산업단지 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신청자 작격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0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일반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 존속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원	크게미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형저가 주택 등)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부적격 통보 받 은 자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0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0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대리인신청 시 추가사항	0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표2>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 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자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자 영 업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②, ③ 세무서
자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 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표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 주민센터 ■ 일사편리(kras.go.kr) ■ 이택스(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주민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표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세무서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모집공고일이 포함된 당해연도도 인정함)의 5개년도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4.12.09(월) ~ 12.13.(금) (5일간, 10:00~17:00)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47-3번지)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국민은행	393301 – 04 - 110628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잔금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7 8	서류유형		701 112	발급	취임 및 유입기계
구 분	필수	해당자	구비 서류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0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곤진 계약 시	0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계기시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신분증	대리인	• 계약자,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 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 (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 납은 불가)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 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 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잔금완납, 열쇠인수, 이사 등 입주절차 진행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 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 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 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② 10억원 초과 : 35만원
-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③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6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삼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함에 따라 부적석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본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소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기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름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안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완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증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산정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마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보고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안 등적 시설 시설 기계존속에 그 배우자 보는 사업자를 가장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리점등이 공부상 추택으로 통재되어 있으나 주택에 도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리점등이 공부상 추택으로 통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되는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아 가는 해당이 말한다는 제공조제3항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수 전자를 입기한 경우 전략을 발한다면 경우 보양기관을 등 당하다 함) 9. 주택공급신정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건축이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일위가업법률로 가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는 제공조 및 제양조에 따라 건축이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일위가업법률로 가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는 제공조 및 제양조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 경우(하당 분양권등을 때수한 사람은 제외) 9. 주택공급신정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제1항제적으 이 건축 당시의 연합에 따른 전략한 경우로 생명이 방안 문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제외함 가 주택가려면 185년 전략 또는 일본 등 점반지 못한 사람이 엄치주택을 경에 또는 공대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지원으로서 보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엄치주택을 경에 또는 공대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지원으로서 보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으로 취임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현수에 65제곱리다를 초차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인장인으로서 거추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대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을 되었다다면 등록 취득한 경우로 한당이 나는 주택공급에 대한 구역을 보안하다면 당시되었다면 등록 기원으로 가 보안 전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경우 다면 함께 보다면 하는 경우 전략으로 기관하고 있는 경우 전략으로 가 수입 요한다면 하는 기관을 가 수입 문학자 기관을 보안하다면 하는 기

7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차(10%)	잔금(70%)	비고
		계약 시	2025-12-15	2026-06-15	입주지정일	
84A	9,685,000	968,500	968,500	968,500	6,779,500	
84B	15,344,000	1,534,400	1,534,400	1,534,400	10,740,800	
84C	13,671,000	1,367,100	1,367,100	1,367,100	9,569,700	
113	17,982,000	1,798,200	1,798,200	1,798,200	12,587,400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건축법시행령」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국민은행	393301 – 04 - 110657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잔금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천정형 에어컨, 가전/가구/마감재/평면선택 관련 옵션 등) 중 일부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또는 변경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또한, 평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선홈통 또는 배수구는 홈페이지상 표현된 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구분 옵션명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설치 개소 공급금액 비고 옵션1 거실, 침실1 2 3,800,000 옵션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4 6,700,000 84A 84B 84C 옵션3 (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2 4,180,000 (공기청정형)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옵션4 4 7.470.000 시스템 시스템에어컨 삼성 에어컨 공기청정 거실, 주방, 침실1 3 옵션1 5,000,000 옵션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9,370,000 113 옵션3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3 5,570,000 (공기청정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옵션4 6 10,520,000

[단위 : 원, VAT 포함]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2,3에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옵션명		주택형	선택	구성내용	공급금액	비고
			84A	옵션1	침실3 여닫이형 붙박이장 (1개소)	1,400,000	
			84B	옵션2	침실2 슬라이딩형 붙박이장 (1개소)	1,600,000	
	침실2, 3	붙박이장	84C	옵션1	침실3 슬라이딩도어(2S)+포스트형 시스템가구	1,900,000	
	G 22, 3	물리이경	04C	옵션2	침실2 슬라이딩형 붙박이장 (1개소)	1,600,000	
			113	옵션1	침실3 슬라이딩형 붙박이장 (1개소)	1,400,000	
			113	옵션2	침실2 슬라이딩형 붙박이장 (1개소)	1,600,000	
			84A	옵션1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1,300,000	
			04A	옵션2	조명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전신거울	4,000,000	
			0.40	옵션1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1,300,000	
	침실1	스타일업	84B	옵션2	조명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4,000,000	
	드레스룸		84C	옵션1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1,300,000	
			04C	옵션2	조명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4,000,000	
			112	옵션1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1,700,000	
			113	옵션2	조명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악세사리판넬 + 유리붙박이장 + 파우더장	6,400,000	
		슬라이딩도어 84A/		4B/84C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수동)	1,100,000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113		포켓 슬라이딩 도어 (수동)	800,000	
776	시스템가구		84A/84C		주방팬트리 + 발코니2 시스템선반	800,000	
공간 -타일업			84B		발코니2 시스템선반	500,000	
-926			113	옵션1	주방팬트리 + 발코니2 시스템선반	900,000	
			113	옵션2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600,000	
			84A	옵션1	타일(600*600) (거실 + 주방 + 복도 + 팬트리)	2,500,000	
				옵션2	광폭 강마루 (거실 + 주방 + 복도 + 팬트리 + 침실 등)	700,000	
	바닥마감 스타일업		0.40	옵션1	타일(600*600) (거실 + 주방 + 복도)	2,500,000	
	미국미는	i — 4 2 8	스타일업 84B		광폭 강마루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 등)	700,000	
			113	옵션1	타일(600*600) (거실 + 주방 + 복도 + 팬트리)	3,000,000	
			113	옵션2	광폭 강마루 (거실 + 주방 + 복도 + 팬트리 + 침실 등)	800,000	
			84A	옵션1	세라믹타일 (아트월)	4,100,000	
			84A	옵션2	시트판넬 (거실창 측, 소파 뒷벽, 복도, 현관) + 현관 가구판넬	1,650,000	
			0.40	옵션1	세라믹타일 (아트월)	6,900,000	
			84B	옵션2	시트판넬 (거실창 측, 소파 뒷벽, 복도, 현관, 주방) + 현관 가구판넬	2,170,000	
	벽마감	스타일업	9.4.0	옵션1	세라믹타일 (아트월)	4,100,000	
			84C	옵션2	시트판넬 (거실창 측, 소파 뒷벽, 복도, 현관, 주방) + 현관 가구판넬	3,140,000	<u> </u>
				옵션1	세라믹타일 (아트월)	4,900,000	
			113	옵션2	시트판넬 (거실창 측, 소파 뒷벽, 복도, 현관, 주방) + 현관 가구판넬	2,200,000	
				옵션3	시트판넬 (거실창 측, 소파 뒷벽, 복도, 현관) + 현관 가구판넬	2,000,000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액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가구의 길이, 구성,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타입별 추가선택품목 관련 항목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벽과의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3 드레스룸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화장대 위치가 옵션에 따라 다르게 조정되어 설치됩니다.
-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고급형 붙박이장의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바닥과 벽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옵션형에 따라 화장대의 크기 및 구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로 가구의 구성과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에 과다한 중량물 적재 시 파손 및 판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는 의류보관용으로 과다한 적재물 적치 시 파손 및 판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가구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3 붙박이장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드레스룸 스타일업 옵션2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드레스룸/벽마감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본공사 시공 여건에 따라 디테일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드레스룸 스타일업 옵션2 선택 시 상부 선반을 탈착할 경우 선반 하부에 조명이 설치된 부분은 손상될 수 있으며, 손상 시 재설치는 불가합니다.
- 슬라이딩 도어 바닥 레일 마감판은 본공사 시공 시 한 판으로 제작되어 시공됩니다.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한축 도어는 고정되어 시공됩니다.
- 본공사 시 시스템선반의 사이즈, 형태, 재질, 설치방식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조명안정기의 설치유무, 위치, 방식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의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패턴은 램덤으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벽마감 스타일업 선택 시 그 외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벽체마감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3타입의 경우 발코니2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 옵션2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명스타일업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옵션명	주택형	선택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옵션1	거실 우물천정 4면 리니어조명 (디밍제어)	2,400,000		
		84A	옵션2	주방 라인조명	500,000		
			옵션3	간접조명 (아트월, 소파뒷벽, 복도 / 픽처레일 포함)	1,600,000		
ᆓᄜ	T. H. L. E. O. O.	84B 84C 113	옵션1	거실 우물천정 4면 리니어조명 (디밍제어)	2,400,000		
조명 스타일업	조명 스타일업 (거실 + 주방 + 복도)		-	옵션2	주방 라인조명	350,000	
— 기 큰 ㅂ	(기절 + 구정 + 숙도)		옵션3	간접조명 (아트월, 소파뒷벽, 복도 / 픽처레일 포함)	1,750,000		
			옵션1	거실 우물천정 4면 리니어조명 (디밍제어)	2,900,000		
			옵션2	주방 라인조명	500,000		
			옵션3	간접조명 (아트월, 소파뒷벽, 복도 / 픽처레일 포함)	1,600,000		

- 조명 스타일업 옵션선택 시 조명기기의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고,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명기기의 측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옵션형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의 램프 색온도는 옵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기준 색온도로 설치되며, 그 외 디테일,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접조명 (거실아트월, 소파뒷벽, 복도)의 경우, 픽처레일이 함께 등에 부착되어 시공됩니다.
- 조명 스타일업 옵션선택 시 우물 천장내의 기본 조명인 직부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우물천장 라인을 따라 우물천장리니어등이 설치됩니다.

■ 주방스타일업

품목	품목	주택형	선택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84	IA	세라믹타일마감 (주방벽, 하부장/아일랜드 상판) + 아일랜드 하부장 스타일업 + 주방 상부플랩장 + 와이드사각 싱크볼 + 독립형 후드 + 주방홈바	10,100,000	
		84B		세라믹타일마감 (주방벽, 하부장/아일랜드 상판) + 아일랜드 하부장 스타일업 + 주방 상부플랩장 + 와이드사각 싱크볼 + 독립형 후드 + 주방홈바	11,850,000	
	주방 스타일업	84	IC	세라믹타일마감 (주방벽, 하부장상판) + 하부장 스타일업 + 주방 상부플랩장 + 와이드사각 싱크볼	7,100,000	
		11	13	세라믹타일마감 (주방벽, 하부장상판) + 하부장 스타일업 + 와이드사각 싱크볼 + 주방홈바	10,800,000	
	외산독립형후드	11	13	팔멕 (ELLE IS 180)	5,800,000	
	발코니2 스타일업	11	13	다용도실 수납특화가구	3,300,000	
		84A	옵션1	컨버터블형 가구장 + 키큰장 (인출서랍장)	1,300,000	
	ᄌᆘᆡᅱᆔ	84B 84C	옵션2	4도어/3도어형 가구장 + 키큰장 (인출서랍장)	1,300,000	
	주방 키친핏	112	옵션1	컨버터블형 가구장 + 키큰장 (인출서랍장)	1,400,000	
		113	옵션2	4도어/3도어형 가구장 + 키큰장 (인출서랍장)	1,400,000	
주방 스타일업	빌트인 냉장고	전타입	옵션1	LG전자 [냉동고 + 냉장고 + 김치냉장고 (컨버터블)]	5,300,000	냉장: BC1F2AA 냉동: BC1L2AA 김치: BC1K2AAC
			옵션2	LG전자 [냉동고 + 냉장고 + 김치냉장고 (4도어/3도어)]	6,700,000	냉장,냉동: BC4S1AA1 김치: BC3K1AA1
			옵션3	삼성전자 [냉동고 + 냉장고 + 김치냉장고 (컨버터블)]	4,900,000	냉장: RR40C7905AP 냉동: RZ34C7905AP 김치: RQ34C7915AP
			옵션4	삼성전자 [냉동고 + 냉장고 + 김치냉장고 (4도어/3도어)]	5,200,000	냉장+냉동 :RF60DB9KA1AP 김치: RQ33C74E1AP
	인덕션	전타입	옵션1	LG전자 (3구_BEI3GQBI)	1,200,000	BEI3GQBI
	한국인	선되급	옵션2	삼성전자 (3구_NZ63T5701AK)	650,000	NZ63T5701AK
	전기오븐	전타입	옵션1	LG전자 (MZ385EBT1)		MZ385EBT1
	인기오는	신다입	옵션2	삼성전자 (NQ36A6555CK)	470,000	NQ36A6555CK
	시기비처기	전타입	옵션1	LG전자 (DIB22S)	1,200,000	DIB22S
	식기세척기	선탁컵	옵션2	삼성전자 (DW60T7065SS)	900,000	DW60T7065SS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 발생(세대별 상이할 수 있음) 및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상판의 뒷선반은 미설치 됩니다.
- 84A, 84B, 113타입 주방스타일업 옵션미선택 시 주방홈바 위치에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LG 및 삼성 가전제품은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 가구의 열림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의 도어색상은 (LG전자 전타입 크림화이트, 삼성전자 전타입 새틴화이트)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방 키친핏 옵션 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키친핏은 가구선택옵션으로 빌트인가전은 제외된 옵션입니다.
- 주방 키친핏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상부장) 및 공간이 설치되며,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으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 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에 포함된 가전 품목은 손잡이 위치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미러타입의 경우 반대방향으로 설치되며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 품목의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냉장고 품목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러세대타입)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전기오븐은 전자레인지와 오븐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84A. 84B타입은 일반형 후드. 84C. 113타입은 독립형 후드가 설치됩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인덕션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부착형으로 시공되며,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형별에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쿡탑, 식기세척기 등)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가전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전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3타입의 경우 주방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벽마감 스타일업은 옵션3만 선택가능합니다.

■ 욕실/현관 스타일업 (욕실1 : 공용욕실, 욕실2 : 부부욕실)

구분	옵션명	주택형	선택	구성 내용	공급금액	비고
	ON1 VELOIM	84A/84B/84C		벽타일 고급화(600x600) + 바닥타일 변경 + 고급형 일체형 세면대 + 하드웨어 고급화 (세면수전, 욕조수전, 악세사리류) + 하부조명형 욕실장(여닫이)	1,200,000	
	욕실1 스타일업	1	13	벽타일 고급화(600x600) + 바닥타일 변경 + 고급형 일체형 세면대 + 하드웨어 고급화 (세면수전, 욕조수전, 악세사리류) + 하부조명형 욕실장(여닫이)		
		84A/84B/84C		벽타일 고급화(600x600) + 바닥타일 변경 + 고급형 일체형 세면대 + 하드웨어 고급화 (세면수전, 샤워수전, 샤워부스, 악세사리류) + 하부조명형 욕실장(여닫이)		
욕실 스타일업	욕실2 스타일업	113		벽타일 고급화(600x600) + 바닥타일 변경 + 세라믹타일 (일부벽, 카운터세면대 상판) + 하드웨어 고급화 (세면수전, 샤워수전, 샤워부스, 악세사리류) + 조명형거울 및 고급형 하부서랍장		
	스마트 복합환풍기	저디이	옵션1 욕실1 [휴젠뜨3 (FHD3-C150P기본)]		500,000	
		전타입	옵션2	2 욕실2 [휴젠뜨3 (FHD3-C150P기본)]		
	비디이케허 야버기	저디이	옵션1	욕실1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_C831000E, 도기_C360000B-6DAKMS01S)]	90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옵션2	욕실2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_C831000E, 도기_C360000B-6DAKMS01S)]	800,000	
	х п	저디이	옵션1	중문_3연동 슬라이딩 도어 (수동)	1,650,000	
현관	중문	전타입	옵션2	중문_3연동 슬라이딩 도어 (자동)		
스타일업	현관스타일업 (고급화)	전타입		현관 팬트리유리도어 및 FIX유리판넬 + 현관 팬트리 시스템선반 + 신발장 상하부조명		
	현관 안면인식 시스템	전E	타입	안면인식 현관 카메라 + 월패드 업그레이드 (13인치)	500,000	

[단위 : 원, VAT 포함]

- 욕실 스타일업 옵션선택 시 욕실장 하부조명의 형태, 설치방식, 조도 및 조명안정기의 설치위치, 방식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복합환풍기 선택 시 세대 내 욕실에 제품이 설치되며, 기존의 일반 배기팬의 설치 위치와 상이합니다.(유상옵션 선택 시, 미설치)
- 스마트복합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복합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평면도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과 바닥마감 사이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신발장 옆 가구 마감의 크기 및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마감 형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수동/자동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 디테일의 차이 및 이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신발장 하부조명은 수동으로 사용 가능하며, 스위치는 신발장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천장몰딩, 걸레받이의 설치여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	계약시	10%					
중도금 1차	2025.12.15	10%	㈜국민은행	393301 – 04 - 110673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중도금 2차	2026.06.15	10%	(귀국민근영	393301 - 04 - 110073	구렉포시모등등자 급구피에프급당시자		
잔금	입주지정일	70%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확장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4011동 0101호 경우, 입금자명을 '40110101홍길동'으로 기재) 추가 선택 품목의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발코니 확장 대금의 납부일정[계약금 10%(계약 시) / 중도금1차 10%(2025.12.15.) / 중도금2차 10%(2026.06.15.) / 잔금 70%(입주지정일)]과 동일합니다.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성능개선,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상황 등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 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아파트는 단일제품을 제공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엑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장에는 바닥재 및 벽지, 천장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형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9 마0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품목 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1) 바닥재	바닥재(마루, 타일(욕실, 발코니), 현관바닥 마감재 등 일체), 굽틀,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해당부위 벽체마감일체(벽지, 타일, 인조석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도장	콘크리트 면처리, 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마감
3)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해당부위), 발코니 천장도장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4) 조명기구	전체 조명기구(부착형, 매입형) 및 각종 스위치 등	전기 배관/배선
5) 욕실	천장, 타일,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해당욕실)), 샤워부스(해당욕실), 욕실장, 욕실환풍기, 콘센트, 바닥배수커버, 욕실액세서리(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일체, 수전류, 젠다이,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등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6) 주방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및 기구(가스쿡탑, 렌지후드 포함), 벽 마감, 수전류 일체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7) 문	문틀, 문선,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발코니, 내부 창호
8) 가구류 및 기타	가구류일체(선반 포함), 수전류일체	없음

■ 마이너스 옵션 금액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113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금액)	38,756,000	38,516,000	38,756,000	51,632,000	

[단위: 원]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미선택 중 택일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폼목(유상옵션) 선택 계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의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진행 중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된 시설물을 훼손할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시공 시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견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는바,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와 발생한 분쟁 등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분양대금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구분	내용
고통	일반사항	고경 등요용은 스타지의 아이템 등가 위한 것으로 실제와 되어가 있는 수 있으고 건설수의 및 현실을 설치 발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또는 1910 대통을 구시하여 전체를 집는 마상 전쟁 목대달에서는 조중 등이 구시 전체 및 교계를 요구한 수 있으므로 한 다기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채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부탁 기원들고 등에 기계된 마양과 수는 이상이 병원으로는 발가하면도 마양과 수요은 자비하 확인하신 후 계약을 제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부탁 기원들고 등에 기계된 마양과 수는 이상이 병원으로는 발가하면도 마양과 수요은 자비하 확인하신 후 계약을 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자 의료 등로 및 공급계약에서 기가 동보일으로 이용되었다. 이상자 의료 등로 및 공급계약에서 기가 동보일으로 기반에 시원이 전체 전체 보안 18년 등 제소를 기본했다. 역사 등을 보내하는 19년 수 있습니다. 이상자 의료 등로 및 공급계약에서 연구 중요으로 로기반에 의한 설립 등, 제소를 기본 생산 기원을 제공하는 기원 생산 기원을 제공하는 기원을 제공하는 19년 등에 관심하는 기원을 제공하는 19년 등에 관심하는 기원을 제공하는 19년 등에 보는 경소를 경소하는 19년 등에 관심하는 19년 등에 관심하는 19년 등에 관심하는 19년 등에 의용되다. 이상자 의료 등로 생산 경소를 보면 보는 경소를 보면 19년 등에 관심하는 19년 등에 보는 19년 등에 의용되다. 이상자 의료 생산에 부탁하면에 발생하는 대자되는 19년 이 대본 공보원에 의용되는 19년 등에 의용되는 19년 등에 가장되는 19년 등에 기원을 보면 19년 등에 의용되는 19년 등에 의용되는 19년 등에 기원을 보면 19년 등에

	구분	내용
	일반사항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붕 재료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안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안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 (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인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서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증인 전후 최종 인하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야 합니다. · 건축물 상충부 및 즉확에 의용용 구업물 담양 발찬사설 BPV, (위성인테나 이동통신 경계) 파로침 항공장에등 등의 서울일이 관람되다 및 설계함에 따라 설치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및 빛의 산단에 의한 사생활의 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따라 미술장식품이 설치되며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 인하가 절차 결과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결정되게 비용은 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IoT(사물인터넷) 등 단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재해, 질병, 물류파업 등)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입주예정일의 6개월전 분양자에게 고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재해, 질병, 물류파업 등)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기준 입주예정일의 6개월전 분양자에게 고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재해, 질병, 물류파업 등)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기준 입주예정일의 6개월전 분양자에게 고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현재지면,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계획될 수 있으며, 단지 원학점으로 유학하여 사용될 수 있으면 유학에 당이 함께 전혀 입자이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0월 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 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축, 성능 상품가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하기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몽	단지 내·외부 여건	· 청주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시 공공(청주시청 또는 충북도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오수펌프장, 통신탑, CCTV탑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연구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자연환경(백로서식지, 송절방죽, 신정방죽)에 따른 냄새나 소음으로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및 인근 사업자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및 인근 사업자로으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앙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 공개공지 및 단지의 4면이 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정산하지 않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지 내 옹벽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유치원: 제7권역* 공립유치원 분산 배치 (*제7권역: 봉덕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솔밭초병설유, 운천초병설유, 증안초병설유, 직지초병설유, 진흥초병설유, 청주내곡초병설유, 흥덕초병설유) ② 초등학생: 새터초등학교 임시배치(現 통학구역 청주내곡초등학교 배치 불가) ③ 중학생: 청주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④ 고등학생: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 · 테크노폴리스 S3블럭은 現 통학구역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새터초등학교)에 개발사업 유입학생 전체를 임시 배치합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동별현황	 각 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약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01동, 304동 근방 지상 1층에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및 303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주거), 경로당, 302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비주거), 303동, 304동, 사이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각종 소음(생활소음, 부대시설 옥상 실외기 등)과 실외기 가림막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302동은 오피스텔동으로 하부에 판매시설 설치로 각종 소음(생활소음, 근라생활시설 옥상 실외기 등) 및 진동, 분진, 반세와 옥상 실외기 가림막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근라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공조기 및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3동과 304동 사이, 302동 하부에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차량운행, 주차관제 등)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 옥상 및 측벽에 81.설치를 위한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가용 DA(Dy Area) 및 지하우차장 채광을 위한 탑리이트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증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조경 및 동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3동과 304동 사이 주차장 출입구에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물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주의 위치 및 형태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따라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면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서대대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필로터를 상부에는 관련 법구에 따라 인명 등의 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동 필로터층 상부에는 관련 법구에 따라 존중 출입되는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필로터를 상부에는 관련 법구에 따라 연령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원항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하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체계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하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체계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하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진체계호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및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요즘 주자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계 및 충병, 항,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용진동·약취발상시생활 참해 등 생물의 볼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계 및 충병, 항,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용진동·약취발상시생활 참해 등 생물의 볼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시동의 용, 호수, 충별 위치에 따라 난전력이 높이 난건대의 향태 및 재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의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추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추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 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빚공해 및 본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한 세대는 소음, 빚공해 및 본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검석 쌓기 또는 용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안하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악탑층에 의장용 구조를, 설비 통기배관, 위상인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이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하는시업법 제69조으로 및 '당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용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외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와준비가 보고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고 하는 첫 환경으로 이 등록신설 의 목과원센터와 협외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목상품이가 및 경제 등이 보고 함께 보고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고 참가되는 있고 참가되는 의 공화원을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고 하는 기소 기상을 사용하는 함께 이 문통신설 등의 공장은 등의 상동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고 하는 기소 기상을 사용하는 함께 시수되는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 조리 구조체는 정말구조계산에 따라 최적임될 수 있으며, 이비 때로 백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조에 구조체는 정말구조계산에 따라 최적임될 수 있으며, 이비 대로 설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조에 구조체는 정말구조계산에 따라 최적임될 수 있으며, 이부 이본을 비원될수 있습니다. - 단지와 약보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점 보는 주변단자 민업에 따라 설계적 위한 기상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대본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원의 지점 보는 주변단의 대원에 따라 설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라 공장관계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의 가준은 수리 제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대 국공 인상수도 하수도 도시가는 한 전통 등에 관이 보신에 따라 생기가 반점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국공 인상수도 하수도 도시가는 한 전통 등에 관계 함께 보고 보신에 사용 시한 전원을 수 있으며, 단지된 내용 등의 인접함 경우 있습니다. - 단지 배계 등신 등에 모양 환경을 가장하는 기관 사용이라 등에 대공 보신에 대공 부분이 가장을 가입하는 보건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계로 전환으로 가장 하는 도시에 함께 등은 수 토화일에 따라 보건에 대공 보건에 되는 보건되었습니다. - 단지 배계로 전환으로 사용으로 하는 모양 함께 등은 주는 독화일에 따라 기가 반점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계로 전환으로 시작하는 지수 등에 등에 관계적으로 가입하는 등에 함께

	구분	내용
	외관계획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오관 디자인(색채 줄는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규, 자하층 출입규,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사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가보관소, 쓰게기 분리수가함 등), 조경 디자인 B 위치 및 내용 난전의 형태 용벽 디자인 등은 살계 및 인하가 과정 발주처 할인에 따라 살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압주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압주자의 개인 추항이나 만원에 약한 변경(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안하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주는 단지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부 미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야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사업주체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배립니다. 아파트에 적용된 외만특화(특히 측벽 강조디자인 등),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하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압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301동, 303동의 경우 단지 상품성 강화를 위해 옥탑 강조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조형물 및 로고(B))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상 옹벽파라펫 및 의장용 구조물은 구조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설치환경에 따라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형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증의 건물 와바는 항공장(등) 생물 예정이므로, 이로 안하여 구인하나 안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과(하는) 환경 사용 환경과 함의 장상의 함의 당하여 위하나 위치나 수물이 변화되나 주기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관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안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성됨(에어건실와기 배기팬 설비사설 쓰레기 수가시설 등로 인해 알조권조망권소용진동시생활 참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나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술)인터,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참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회기간 중로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공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안하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만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이피는 타지나 대생기 남고라가장 재활상 보면노 등이 상태와 마이오 만양 부세대는 배박 있소을 본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게 수가 유명이 상대 전인으로 안반 패함 발생할 수 있으며 과제 수가 유명이 생기 수가 유명이 상이 집단으로 안반 패함 발생할 수 있으며 과명 시원되다는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및 설치범위는 사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자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자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자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자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민공동시설 등부가(부임실) 생명은 주수 높은지상을 조명하면 원명수(기술 때는 개안 보기에 되어 있는 관리비로 부가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무민공동시설(기육 나타)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C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장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용에 따라 영화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에 들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구민공동시설(기육 나타)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C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장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을 당시설에 따라 의동 및 보험에 따라 의동 및 보전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대한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따라 의동 및 보건에 다른 가입된다 경험 및 보수시설의 에라면 실외기 설계 연료 인의 해가 원제 문에 소리 및 보건되어 있는 제가 환경 및 보건되어 입어가 실명 수 있습니다 관리생물 기상에 대한 의상에 가 권본에 함께
	공용설비 시스템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되는 자료를 보내 위한 보내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추차장 등 동파우려 배관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추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훼통,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제조사 및 SPEC(속도, 인테리어, 버튼방식 등)은 당사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카 내부 버튼은 모든 연령층의 사용성을 위해 충별 물리버튼 방식으로 구성되어 버튼이 많아보일 수 있으나(최고 41층)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특정 제품(브랜드)의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말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양, 용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안등 시설물로 인해 일부 실의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지	주차장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1,072대/공동주택 858대 오피스텔 165대, 근린생활시설 4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판매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지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301, 303 304동 하부 지하 1층~지하 3층이며, 302동 하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증치 303동, 304동사이) 오피스텔근생(출입 302동하부) 주차구획이 지하에서 나뉘어져있고 지하에서 각 구역으로 통행 불가하니 필히 확인하신 후계약바랍니다. 각, 주차장 출입구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만/형사상의 책임 등 이의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열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 색채디자인은 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로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밥하게 계획되었으며, 추가적인 충전시설(충전소, 이동식충전기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함재 등)를 위하여 위치 및 구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자하우차장 내 주차유도시스템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지상의 경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2동 지하1~2층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구역이 구분되어있고 지하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계약바랍니다.
단위 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정 높이는 2,400mm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세대 연 비확장세대가 위치할 경우 단열등의 추가 설치로 해당 세대의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생용타입의 침실1도어 개폐시 욕실스위치 및 욕실도어와 간섭되어 사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욕실의 경우 재료분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차가 계획되어 있어 슬리퍼를 사용할 경우 문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식개념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획으로 향후 이로 인한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욕실실이 방법되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1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념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욕실2는 건식욕실 (사위부스 제외)로써 단차가 없이 시공 됩니다. (습식정소시 물념침 및 욕실화 걸림이 발생 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2의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념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육조하부 및 샤워부스 제외) . 본 공동주택은 벽식혼합무량판구조로 침실2, 3 사이에 기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건식욕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인식부족, 부주의, 오사용, 관리미흡 등의 사유로 시행자, 시공사에게 발생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일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네타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정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공간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에 연양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하향식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 및 전열교환기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 교차시공 됩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습식단차구간은 사용자편의성 개선 하자예방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사업승인도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벽체 하부에는 벽체내구도 향상, 하자예방의 목적으로 걸레받이, 걸레받이페인트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출입문은 일반PD도어가 설치되며 자재의 특성상 기밀하지 않음으로 틈새를 통한 온냉기의 유입,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검토에 따라 거실 창호 하부 보강 바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가 상이한 관계로 창호 높이 및 천정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거실 및 발코니1 창호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철재로된 투시형난간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거실창호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외측장은 고정된 픽스창과 벤트창으로 구성되고 내측장은 유지관리 및 사용성을 위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공동주택은 철재로된 투사형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리며 향후 유리난간 구조반경 피손, 임환조작, 고정철물 제거 등 사용자부주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어대한 책임도 시행사 시공사에 제가할 수 않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볼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한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성,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찬정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제종(ASS) 도어로 시공됩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절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욕실계용, 수전류, 각종 약세서리류(수건절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상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소상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 및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 및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실과 욕실 도어에 손까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대 적용되는 대형라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제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자이, 자연무나(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회장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시선 등에 따라 타감재, 택계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한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점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선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값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을 등의 사업을 보여되는 사업을 들어 있습니다. 세대내 전용에는 조명, 소방설비, 갑자기, 스파커, 환기구, 에어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설치방향, 간격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내 전용에는 조명, 소방설비, 갑자기, 스파커, 환기구, 에어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설치방향, 간격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단위 세대	전기 기계 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편, 천정 점감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시공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동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왼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리 및 소방감자가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만 및 화재한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찬정 커튼박스, 凡청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입상해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리 및 산업감자가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만 및 화재한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찬정 커튼박스, 凡청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입상해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원식 드레스룸,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점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점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참신 이 옵션대에 따라 크리스를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점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モ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념난방반 방식이 적용된니다. · 세대보임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부리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을 발생으로 사생활 참에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증의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32.84에 의거하여 침실벽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 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정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는 스탠드형 및 백부형 냉매바관이 설치됩니다. · 각 설의 전기 시 현상이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정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는 스탠드형 및 벽부형 냉매바관이 설치됩니다. · 각점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는 스탠드형 및 박부형 방매바관이 설치됩니다. · 각점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는 스탠드형 및 박부형 방매바관이 설치됩니다. · 각정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는 스탠드형 및 박부형 방매바관이 설치됩니다. · 각점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는 스탠드형 및 박물형 방매바관이 설치됩니다. · 각점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점실에 드로 현망하고자 할 경우 인수 기관가 부담으로 변경하고, 관할 지점에 신경하여야 합니다.
?:	본주택	- 후방 벽, 욕실 벽 / 바닥 및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생편, 전기 전기 전기 건보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이(슬리이딩, 여닫이, 팩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사항(색상, 사이즈), 제조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제의 다양한 두께(국방상반 병 타일 / 자전 가공석제(세라막타일)수상옵션), 인테리어성 마감재(거실아트월 가구판별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각본주택 설치되어진 실외기 교병장 및 백체는 일부 형태, 위치, 크기, 높이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기 급기, 배기 설치위치에 커른박스의 형태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문주택에 설치되어진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보공사시 변경되며 난간대 안전성 검토에 따라 높이 및 사양이 변경됨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건본주택에 여성되어진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보공사시 변경되다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 어움된 이전자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계의 종절, 몸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시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흥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시압주체에서 연출한 사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수인도서와 자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설치된 한지모함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인로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의 설치된 한지보함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인로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의 설치된 한지로를 보는 전부적을 보면 보이면 보이면 보이면 보이면 보이면 기관 보이면 가입되었다면 보이면 가입되었다면 보이면 기관 보이면 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의 설치된 프로플러는 건본주력 보험방점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의 인터 라입에요사 용안도하면 기관 해보다면 보이면 마감자에 준하여 시공되나, 타입별 마감자재 정보는 별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의 만하기로 함은 세대의 조망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소, 설치 위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미리 타입에요사 용안 기본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소, 설치 위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미리선임 주택에 함은 건물 등에 가입 등에 등에 가입으로 부탁 보일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미리인된 주택에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사수 주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어 설치되는 조망의 생모으로 제대를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미리언리 가입을 등의 의원 상과 등을 시작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구 내어 설치되는 조망의 생외적으로 설계 다들 수가 사용되는 사용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본주택 이 보다를 하는 제공 가입을 보고 수 있는 설치 기본 등에 공모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주의 대본주에 관심 수가 사용되어 되는 사용수에 되는 경우에 모든 기관 가입 사용자를 보면 가지 사용자를 보면 가지 사용자를 위해 가입으로 가지 나를 가지 사용자를 받아 경우 있습니다. 그런본주택 이 라입 병원 등에 함께 함께 결과 경우 등에 함께 등을 받아 보일 수 있음을 유입하시기 되었다면 수 시원되다 있는 지역 기관 등에 함께 함께 보고 사이 전원을 보면 사용자 보안 보안 수 있습니다. 그런본주택 이 보다에

11 기타 주요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2028년 01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2021.02.1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GX룸 등], 경비실(공동주택, 오피스텔/판매시설 각각 1개소, 총2개소), 키즈스테이션,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커뮤티니공간, 용역원휴게실 등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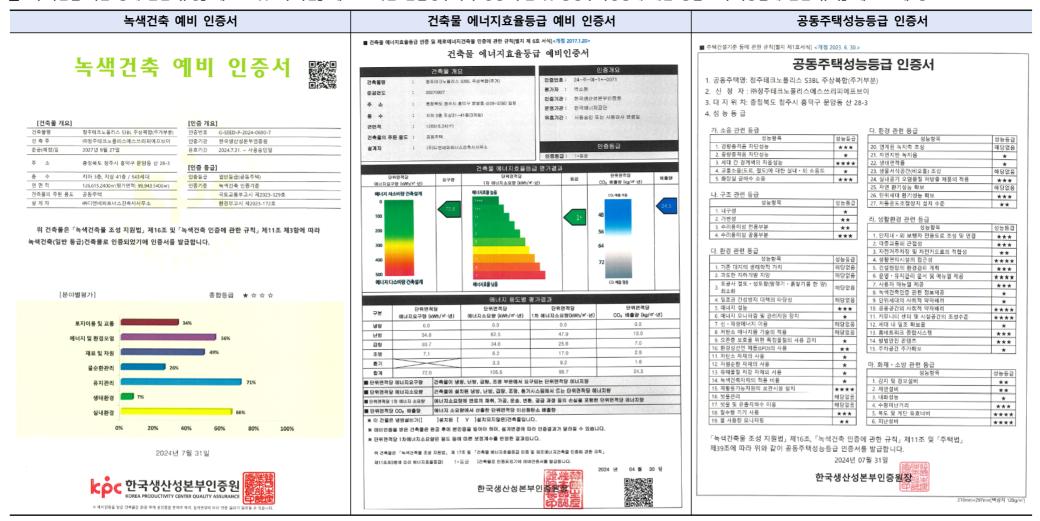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I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0.2072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XII)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최소 6m 이상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2.7m 이상
지도 에 이용	2.7m	2.3m	2.3m	2./111 이경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엔에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부흥이앤씨	주식회사 대화	주식회사 세종씨엠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778,470,200	695,650,431	958,010,000	108,9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함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 방습층을 설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 (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 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을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제7조제2항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	[日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밖의 비용	29,416,310,420 1,487,462,281 1,539,816,305 12,938,243,666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38,456,037,000 1,255,263,000 2,310,628,000		기계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1,008,388,000 1,510,551,000 333,707,000 254,183,000
		그밖의 미용 계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45,381,832,672 1,302,819,000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만열공사 방수, 방습공사 목공사	2,310,628,000 700,051,000 977,657,000 2,100,153,000	71101	설비	사당세어걸미당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저기석비공사	10,295,274,000
	토목	옹벽공사 석축공사	446,844,000	공사비	건축 [}] 사비	기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3,373,195,000 2,232,920,000 220,489,000	공사비	그밖의 <i>공</i> 종	위경기구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가동제어설비공사 투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일반관리비	4,852,112,000 8,027,290,000 1,589,007,000
		우수, 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499,993,000 479,163,000			유리공사	3,862,348,000 1,038,006,000 2,051,873,000		그밖의 공사비	이 윤	7,559,948,000 8,934,484,000 134,981,438,000
공사비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1,892,542,000 6,311,465,000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2,070,625,000 1,267,333,000 1,345,139,000 2,486,387,000	간접비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4,896,607,000 3,581,689,000 16,312,932,783
	건축	부대시설심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392,548,000 3,403,695,000 675,911,000		기계 설비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급수설리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배수설비공사	2,186,643,000 2,656,660,000 1,179,410,000 1,179,410,000 1,261,287,000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계 바의 비용 계	26,254,389,626 51,045,618,409 28,201,110,919 259,610,000,000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211 - 2)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법정 퇴	백지이자	1,487,462,281				
	취득세	취 득 세	1,176,652,416		지상층 구조	S형식 가산비	2,502,054,544
	귀득세	교육세(취득세)	117,665,241				
		재 산 세	123,548,503		공동주틱	付 성능등급	2,975,979,237
	재산세	교육세(재산세)	24,709,700		법정초과복	리시설 공사비	1,102,540,060
		재산세도시지역분	86,483,952	건축비		홈네트워크설비	7,437,121,050
		보 수 료	10,478,194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초고속통신특등급	2,138,575,710
택지비	등기수수료					에어컨냉매배관	3,431,607,120
가산항목		인 지 세	278,299	가산항목		기계환기설비	2,989,276,650
	암석지	반 공사비	5,790,952,240		에너지절약	2,330,532,932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6,410,401,640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445,887,18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89,779,000			전기자동차충전시설	57,422,200
	택지와				법령 개정	피난용승강기 설치	1,995,936,380
	관련된경비	가스시설부담금	60,154,78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1,588,000		분양보	증수수료	794,177,856
		전기인입부담금	115,368,000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15,965,522,252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	28,201,110,919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제 06812024 - 101 - 0000700	207,688,4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1.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 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 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 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분	사업	주체	사	공사
상호	㈜청주테크노폴리스에스쓰리피에프브이	㈜원건설	㈜원건설	㈜원건설산업
법인등록번호	150111 - 0350467	150111 - 0015889	150111 - 0015889	150111 - 0091235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T-L	(북문로2가, 자연타워빌딩)	(북문로2가)	(북문로2가)	Mospennin of C 6/1002 25-4

- 사이버 견본주택: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홈페이지 (https://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더원.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47-3번지(☎ 043-252-0555)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